

1. 전문연구요원제도

•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병무청

• 지원대상 중소·중견기업

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이공계 우수인력을 과학기술의 연구 학문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병역대체복무제도

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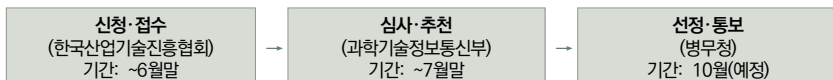
- 병역 지정업체 :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 - 중견기업 :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의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
 - 중소·벤처기업 :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
 - 연구개발서비스업 :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
 - ※ "기업부설연구소"라 함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따라 "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"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
 - ※ "연구개발서비스업체"라 함은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자원특별법」제2조제4호각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기업
- 전문연구요원
 -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중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종사자

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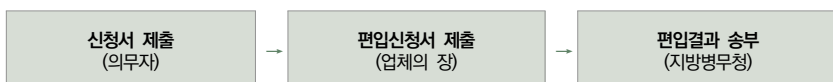
-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

추진절차

-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



- 전문연구요원 편입



신청방법

- 신청시기 : 매년 6월 중(중소·벤처기업은 매년 1, 6월 2회 신청가능)
- 신청방법
 - 기업부설연구소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(<http://www.RNDJM.or.kr>)에서 온라인 작성 후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 - 연구개발서비스업체 :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

문의·처

www.rndjm.or.kr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(02)3460-9124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

병무청 산업지원과